

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통지서(사전, 수시, 체납)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

도로교통법 제32조(정차 및 주차의 금지), 제33조(주차금지의 장소) 제34조(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) 규정을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 제16조(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) 제17조(과태료의 부과)의 규정에 따라 부과통지를 하였지만 폐문부재,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(송달)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19. 9. 2.

음 성 군 수



1. 공고명: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통지서(사전, 수시, 체납)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
2. 기 간: 2019. 9. 2. ~ 2019. 9. 17.(15일간)
3. 대 상: 불임참조
4. 내 용: 불임대상자 중 사전통지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음성군청 건설교통과 교통팀에 방문하거나 우편, FAX (043-871-1920)를 통해 의견진술을 할 수 있으며,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리고, 수시 및 체납 대상자는 교통팀에서 고지서 및 독촉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시기 바라며, 공고 기일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91조에 의거 귀하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(대체압류 포함)됨을 알려드립니다.
5. 문의처: 음성군 균형발전국 건설교통과 교통팀 ☎043)871-3881~6